

제2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12. 5. 18.(금) 14:00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

3. 참석위원 : 이계철 위 원 장

홍성규 부위원장

김충식 상임위원

신용섭 상임위원

양문석 상임위원 (5인)

4. 불참위원 : 없 음

5. 회의내용

① 성원보고

② 국민의례

③ 개회선언

④ 회의공개여부 결정

⑤ 지난 회의록·속기록 확인

⑥ 의결사항

가. 연동형 TV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에 관한 건 - (2012-27-099)

- 라봉하 융합정책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방송프로그램 연동형 TV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 내용(개선방안)
 - ① 보조적 데이터방송에 관한 지침 제9조제3항 개정을 통해, '검증받은 사업자'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완화
 - (1)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2) 자본금·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이 5억원 이상인 통신판매업자
 - 부실업체 사전차단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자본금·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이 5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제한
 - ②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리모콘 및 결제 인프라 등 기술 표준 마련
 - IPTV, 케이블 방송사업자, 개발업체, 금융결제원 등 전문가협의체 운영을 통해 TV 전자상거래 결제방식을 표준화하고, 리모콘 UI/UX 기술개선 및 연동형 TV 전자상거래 결제 시범서비스 추진

나.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 (2012-27-100)

- 석제범 통신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설비제공기준의 개선, 제공절차의 구체화, 관련 용어의 명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시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① 광케이블 제공 기준 개선 (안 제15조)
 - 광케이블 제공대상을 2004년 이전에 구축한 광케이블에서 2006년 이전에 구축한 광케이블까지 확대하되, 2004 ~ 2005년에 구축한 광케이블은 관로를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
 - 제공사업자가 자사의 고장수요 등에 대비하기 위한 광케이블 예비율을 운용 회선의 35%에서 27%로 축소
- ② 관로제공 조건 개선 (안 제15조)
 - 제공사업자가 자사의 고장수요 등에 대비하기 위해 빌려주지 않아도 되는 관로 예비율을 인입구간은 포설된 가장 굵은 케이블의 135%, 비인입구간은 내관의 137%로 신설

- 관로제공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산정기준을 명확히 수식으로 규정

③ 설비제공 거부사유 개선 (안 제16조)

- 설비제공 거부사유 중 제공사업자 본인도 준수하지 않는 자체기준은 이용사업자의 설비제공 요청의 거부사유로 삼을 수 없도록 규정

④ 광케이블 최소이용대가 합리화 (안 부칙 제2조)

- 광케이블은 이용거리와 관계없이 최소 이용대가를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고객에게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우 광케이블 이용대가 최소 산정 구간을 축소 (인입구간 : 100m→50m, 비인입구간 200m→100m)

※ 최소이용대가: 인입구간 100m기준 15,835원/월, 비인입구간 200m기준 16,464원/월

⑤ 설비제공 제도의 추가적 개선 대상 및 기한 명시 (안 부칙 제4조)

- 2014년 12월 31일까지 광케이블 제공 범위·조건, 설비의무제공사업자 지정기준 등 재검토할 것을 고시 부칙에 명시

⑥ 관로 용어 정의 신설 (안 제3조)

- ‘관로’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간 이견 발생하므로, ‘관로’ 개념에 인상 분선관로 등을 포함하여 명확하게 규정

⑦ 설비제공 업무처리기간 단축 및 신설 (안 제18조)

- 관로, 광케이블의 설비 제공 업무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공동현장 실사 기간을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로 규정

○ 위원회 보고안 대비 주요 변경사항

- 예비율 (KT가 빌려주지 않아도 되는 설비 비율)

	현 행	최초 보고안	의결안
관로 예비율 (인입)	150%	120%	135%
관로 예비율 (비인입)	-	120%	137%
광케이블 예비율	인입 35%, 비인입 20%	20%	인입 27%, 비인입 20%

- 광케이블 제공 기준

현 행	최초 보고안	의결안
○ 2004년부터 구축된 것은 제공대상에서 제외 (2003년까지 구축된 광케이블은 조건없이 개방) ※ KT만 개방	○ 관로를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만 개방 ○ 구축된 지 3년 후 부터 개방 ※ KT만 개방	○ 2003년까지 구축된 것은 조건없이 개방 ○ 2004, 2005년 구축된 광케이블은 관로를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에 제공 ※ 2014년말까지 광케이블 제공 기준, 의무제공사업자 범위 재검토

○ 향후일정

-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관보게재 및 공포 : 5월 말
- 고시 이행실태·무단설비 현장점검 : 6월~
- 의무제공설비 대가 적정성 검토 : 7월~

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 (2012-27-101)

- 박재문 네트워크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제17차 위원회('12.3.29) 보고 후,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고시)」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 내용

①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심사 제출 서류 간소화 및 배점조정 등

(1)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 [별표 1] , [별표 2])

- 사업계획서 기재항목 중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여부 평가 요소로 적합하지 않고, 중소 사업자가 작성하기 곤란한 “시장규모 분석” 등 삭제
- 이통사 등 일부 사업자에만 해당되는 항목인 “타사업자와의 위치정보시스템 연동 계획” 등 삭제

(2)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고시)」 개정사항

-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기재사항을 삭제하거나 간소화하고, 분량을 축소하며(200쪽 이내→150쪽 이내), 세부 심사기준 배점을 조정

② 표준화의 방법 및 절차 관련 (안 제32조 및 제37조의2)

- 방송통신 관련 표준화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위치정보 표준화 방법 및 절차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따르도록 하고, 표준화의 추진 업무를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

○ 위원회 보고안 대비 주요 변경사항

- 긴급구조기관의 신고자 신분확인 관련 (안 제28조) : 삭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는 ‘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장이 법원행정처장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정에 앞서 긴급구조기관과 법원행정처 측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법무부 의견을 수용하여 금번 개정안에 미반영

○ 향후일정

-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상정 : ~ '12. 6월

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 (2012-27-102)

- 박재문 네트워크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제12차 위원회('12.3.16) 보고 후,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 내용

① 개인정보 누출 등 통지 및 신고의 방법·절차 등 신설(안 제14조의2)

- 개인정보 누출등의 경우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통지·신고하도록 함

·다만, 이용자가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 게재 또는 전국적 일반일간신문 공고로 갈음 가능

※ 위원회 보고 이후 수정사항 : 방통위 자체 규제심사 결과, 이용자 대부분이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지역 일간신문 공고로 갈음하는 부분은 특정지역에 대한 의미가 불명확하여 삭제

②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컴퓨터 등의 외부 인터넷 망 차단조치 신설(안 제15조제2항제3호)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 컴퓨터 등의 외부 인터넷 망 차단조치 의무화

- 다만, 의무화 대상은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한함

※ 위원회 보고 이후 수정사항 : 규제개혁위원회 사전협의 및 입법예고 의견수렴 결과, 100만명 이용자 개인정보 보유 기준시점 명확화 및 대상 사업자 기준으로 연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기준을 추가

③ 서비스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등 조치 방법 신설(안 제15조의2)

- 3년 이상 서비스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는 파기하거나 다른 개인정보와 별도로 분리하여 저장·관리하도록 함

※ 위원회 보고 이후 수정사항 : 부처협의 결과, 계약으로 별도의 보존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분리·저장된 개인정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용·제공을 허용

·자체 규제심사 결과,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분리·저장하기전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할 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도록 통지절차 조항 신설

④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대상·주기·방법 등 신설(안 제15조의3)

-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연1회 이상 이용내역을 통지하도록 의무화

※ 위원회 보고 이후 수정사항 : 자체 규제심사 및 입법예고 의견수렴 결과, 100만명 이용자 개인정보 보유 기준시점 명확화 및 대상 사업자 기준으로 연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기준을 추가

·부처협의 결과,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정보는 통지 항목에서 제외

⑤ 정보보호 사전점검 관련 규정 신설(안 제36조의2~안 제36조의5)

- 사전점검 권고대상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정보보호 사전점검의 기준·방법·절차, 수수료 관련 규정을 신설

⑥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 관련 규정의 삭제(제39조~제46조 삭제)

-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로 통합됨에 따라 시행령상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 관련 규정을 삭제

⑦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 관련 규정 개정(안 제47조~안 제53조의5)

-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인증에 관한 업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종전 정보 보호 안전진단 대상자와 동일하게 규정

※ 위원회 보고 이후 수정사항 : 입법예고 의견수렴 결과, 인증심사원 관련 조항 자구 수정

⑧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관련 규정 신설(안 제54조의2)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관련 규정을 신설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관련 규정을 준용

⑨ 정보보호 관리등급 제도 관련 규정 신설(안 제55조의2~안 제55조의5)

- 정보보호 관리등급과 관련하여 등급 부여 심사의 기준, 방법·절차, 유효기간, 수수료, 등급 표시·홍보 규정 등을 신설함

⑩ 개인정보침해 사고 관련 자료제출 요구·검사 권한 중관소 위임 규정 신설 (안 제70조제2항)

- 중앙전파관리소에 접수되는 개인정보 침해관련 사항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검사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

○ 향후일정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12. 5월

- 법제처 심사 : '12. 6월
- 차관·국무회의 : '12. 7월

마. (주)케이티, SK브로드밴드(주), (주)LGU+의 초고속인터넷 경품 등 제공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 (2012-27-103~105)

- o 정종기 이용자보호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부당하게 차별적인 경품 또는 약관 외 요금감면을 제공하여 이용자 이익을 현저하게 해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주)케이티, SK브로드밴드(주), (주)LGU+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KT 2억 1천 4백만원, SKB 2억 5천 3백만원, LGU+ 3억 1천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 아울러,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신규가입자 모집금지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기로 함

o 주요 내용

① 조사결과

- 초고속인터넷 3사(주)케이티, SK브로드밴드(주), (주)LGU+는 '11.4.1 ~ '11.12.31 기간 중 초고속인터넷 단품 또는 결합상품에 대한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이용자들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경품 또는 약관 외 요금감면을 제공

② 법 위반행위

- 경품 또는 요금감면 제공과 관련된 부당한 이용자 차별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3] V.5호 가목”을 위반

③ 시정조치 내용

- 금지행위의 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업무처리절차 개선, 이행계획서 제출 및 시정조치에 따른 이행결과 보고 등의 시정조치를 명령

④ 과징금 부과 : 총 7억 7천 7백만원

- (주)케이티 : 2억 1천 4백만원, SK브로드밴드(주) : 2억 5천 3백만원, (주)LGU+ : 3억 1천만원

[7] 보고사항

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 제개정에 관한 사항

-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 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 개정안을 박재문 네트워크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

o 주요내용

①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

- (1) (지정신청방법) 본인확인기관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서, 사업계획서, 심사기준 증명자료, 정관 또는 규약, 재무제표를 준비하여 방통위에 제출토록 함(안 제3조)
 - (2) (심사계획 수립) 방통위가 지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정심사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안 제4조)
 - (3) (심사기준) 지정심사시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안 제6조)
 - (4) (심사방법) 지정심사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심사결과 세부 심사기준에 적합한 지정신청기관은 지정대상기관으로 선정(안 제7조, 제8조)
 - 지정심사는 지정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고, 30일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5) (심사위원의 구성)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위해 관련 전문가를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심사위원으로 위촉(안 제9조)
 - (6) (심사결과 통보)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여부는 방통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안 제10조)
 - 방통위는 지정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지정신청기관에게 통지하나,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한 연기 가능
 - (7) (사후관리) 방통위는 사후에 본인확인기관의 심사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 요구 가능(안 제12조)
 - (8) (본인확인기관의 의제) 「전자서명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인인증기관은 본인 확인기관으로 봄(안 제13조)
 - (9) (휴지·폐지) 본인확인업무를 휴지·폐지하려는 경우 휴지·폐지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방통위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14조 ~ 제17조)
 - 이용자에게 통보 시에는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등을 통해 하도록 함
 - 방통위에 신고한 후에는 본인확인업무를 다른 본인확인기관에게 위탁하거나 인계하도록 함
- ②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 개정안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외부 인터넷망과 업무망을 분리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을 설정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삭제할 수 있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컴퓨터 등에는 물리적 또는 논리적 망분리 방식을 적용토록 함

○ 향후 일정

-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 '12. 5월
- 위원회 의결 : '12. 7월
-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 '12. 7월

나.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제공 관련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 유료방송시장에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의 방송 프로그램 제공 거래 관련 경쟁을 제한하고 시청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들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된 가이드라인을 정종기 이용자보호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

○ 주요내용

① 목적 : 방송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없이 프로그램 제공을 거부·중단·제한하는 행위'를 프로그램 제공관련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유형별 금지행위 판단지침 제시

② 근거 : 방송법 제85조의 2(금지행위)·제3조(시청자 권익보호)·제99조(시정명령)

③ 대상 : 유료방송시장에서의 PP와 SO 등 유료방송사업자간의 프로그램 제공거래 관련 행위에 적용

④ 프로그램 제공관련 불공정행위 주요 유형

(1) 끼워팔기 등을 거래조건으로 프로그램 제공 등을 하는 행위

- 채널 전체 또는 묶음으로 계약체결을 강요하거나 이를 거절할 경우 채널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거부·중단·제한하는 행위 금지

(2)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프로그램 제공거부 등을 하는 행위

- 경쟁사업자와 공동으로 프로그램 제공을 중단·거부하거나 수량·내용을 제한하여 사실상 거래를 거부하는 행위 금지

(3)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프로그램 제공 등을 하는 행위

- 경쟁 PP와 거래하지 않는 등의 조건으로 계약을 강요하거나, 이를 거절할 경우 프로그램 제공을 거부·중단·제한하는 행위 금지

(4) 경쟁사업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제공 거부 등을 하는 행위

- 계열사 등의 경쟁사업자임을 이유로 프로그램 제공을 중단·거부하거나 수량·내용을 제한하여 사실상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금지

⑤ 위법성 판단 시 고려사항

- 경쟁제한성 및 시청자 선택권 침해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각 유형별로 통상적 거래관행 여부 및 거래조건 강요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위법성 판단

○ 향후 계획

- '12. 5. 21 : 가이드라인 시행

Ⅷ 기 타

가.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

-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2012. 5. 30(수).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함

6. 폐 회 (15:35)